

서울고등법원 2022. 12. 9 선고 2022나20279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이선영

피고, 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완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2. 9.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0가합560249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7. 체결된

전세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한 피고의 소외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현금출납공무원)에

대한 167,707,736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2면 마지막 행부터 제3면 제1행의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를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로, 그 이하의 “피고 A”을 모두 “A”로 각 고쳐 쓴다.
- 제3면 제8행의 “피고 B”을 “A의 대표자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으로, 그 이하의 “피고 B”을 모두 “B”으로 각 고쳐 쓴다.
- 제3면 밑에서 제2행 및 그 이하의 각 “피고 C”을 “피고”로 각 고쳐 쓴다.○ 제4면 제2행의 ”위 피고들은“을 ”B과 피고는“으로, 제4행의 ”위 피고들“을 ”B과 피고“로 각 고쳐 쓴다.
- 제4면 밑에서 제5~6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부지인 평택시 F 대 615㎡, G 도로 167㎡, H 대 106㎡”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부지인 평택시 F 대 615㎡, H 대 106㎡와 이에 인접한 G 도로 167㎡”로 고쳐 쓴다.
- 제4면 마지막 행의 각주 1)의 내용 중 ”피고 A“을 ”A“로, ”갑 제4호증“을 ”갑 제7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 제5면 제5~6행의 ”다.항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부지인 나머지 토지)“을 ”다.항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부지 등 나머지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5면 제11행의 “을다 제1, 2호증”을 ”을다 제1, 2, 5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5면 제1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6면 제1행의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을 ”2. 판단“으로 고쳐 쓴다. ○ 제7면 제15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당시 B은 그로 인하여 공동담보 부족상태의 심화가 초래되어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그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 또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B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음을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다14539 판결,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9다247996 판결 등 참조).

을다 제5, 6,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B과 피고는 혼인 후 성격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어 오다가 2017. 3. 1.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B이 2017. 7. 20.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도 원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실, ② A의 대표자인 B은 위 이혼소송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도 A 발행주식 33,000주와 M보험 해약환급금 56,826,510원, N은행 예금 16,187,103원 등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③ A은 B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주로 평택 미군부대 공사를 시행하여 왔고, 2012년 이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여 매출총이익이 2015년 약 13억 원, 2016년 약 12억 원, 2017년 약 10억 원에 이르렀으며, 2017년 사업년도 결산 시 약 11억 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사실, ④ 위 이혼소송에서 감정인인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은 이혼소송

제기 시인 2017. 7. 20.을 기준으로 한 위 주식 33,000주의 가치를 1,137,015,000원(경영권 프리미엄 반영 시 1,307,559,000원)으로, 감정인인 P는 2017. 7. 20.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합계 597,489,600원으로 각 평가한 사실, ⑤ 위 이혼소송에서 피고는 B의 위 금융재산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와 위 주식 등에 대한 위와 같은 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B에게 재산분할금 622,739,522원의 지급을 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B과 피고 사이에 2019. 4. 2. B이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억 원은 2019. 6. 30.까지, 나머지 2억 원은 2024.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조정이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①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합계 573,800,000원(=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6. 8. 2. 접수 제26502호 공동근저당권 163,800,000원+ 같은 등기소 같은 날짜 접수 제26504호 공동근저당권 360,000,000원+ 같은 등기소 2019. 10. 1. 접수 제26852호 공동근저당권 50,000,000원1))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로되어 있었으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가 등기된 채무인 위 각 공동근저당권채무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을 상회하였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후 6개월 가까이 지난 2020. 5. 14.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점, ②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J조합, 중소기업은행 등의 가압류등기가 경로된 시점 역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이후인 점, ③ 위 감정 당시 감정인인 O은 A이 향후 미군부대 공사의 사후관리 및 제주도 등의 타지역 공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 회사의 시공능력 및 평판으로 볼 때 향후 당분간 사업을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점, ④ 이 사건 조정은, B과 피고가 각자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B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피고에게 적극재산을 분배하여야 함을 전제로 성립한 것으로서, 이러한 조정의 내용,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 이를 전후한 B과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가 위 이혼소송을 통해 파악한 B의 재산내역 외에 A의 운영상황이나 B이 대표자로서 연대보증한 채무내역, 연대보증채무의 현실화 가능성 등까지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⑤ B이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재산분할금 중 2억 원을 2019. 6. 30.까지 지급하지 못했으나, 이혼소송 당시 B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들 중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거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기한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만으로 피고가 B의 신용상태를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B과 피고 사이의 이혼이 B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고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정한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가장이혼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B이 위 기한을 지키지 못하자 재산분할금 2억 원을 즉시 지급하는 대신 피고에게 위 2억 원을 전세금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어 퇴거 시까지 위 2억 원의 지급을 미룰 의도로 위 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형, 판사 김재령, 판사 심영진

별지

평택시 F, H에 있는 L동호

철근콘크리트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1층 122.46㎡

2층 115.57㎡

옥탑1층 12.24㎡, 끝.

1)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후 말소되었다(갑 제7, 13호증).